

## 가정폭력 관련 법 이해 -가정폭력방지법 및 처벌법 톺아보기-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81.5%로 2016년도 77.6%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점차,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에 대한 2가지 법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방”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처벌 절차”와 관련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 □ ‘가정폭력’ 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라. 동거하는 친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그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 주기적인 가정폭력의 ‘실태조사’ 로 중대한 문제임을 환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에 이어 2020년에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이하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가정폭력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는 등 향후 대책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중 유의미한 내용으로는 ‘가정폭력 신고인식’과 관련하여 이웃의 아동학대 또는 부부간 폭력을 목격했을 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각각 94.7%와 88.3%에 달해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라고 보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목격 시 신고에 대한 인식률>

단위: %

구분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①+②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이웃의 <b>아동학대</b> 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0.9	4.4	5.3	52.5	42.2	<b>94.7</b>
이웃의 <b>부부간 폭력</b> 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1.4	10.3	11.7	56.0	32.3	<b>88.3</b>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가정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처벌법을 추가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하는 행위도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가정폭력 대응 시설 마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3.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임시 보호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크게 3가지 대응시설 마련(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으로 가정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긴급전화 1366을 설치 및 운영을 통해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를 365일 24시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알림소식> e뉴스

성희롱/ 성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 시 이렇게 하세요!

**영상으로 빠르게 보는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법 3가지!**

▶ 여성긴급전화 1366 (www.women1366.kr)

☎(국번없이)1366 : 365일 24시간

사이버상담(카톡), 온라인 게시판 상담도 가능

